

가정 상담

통권503호

2025

07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 L.A. 011-5227-24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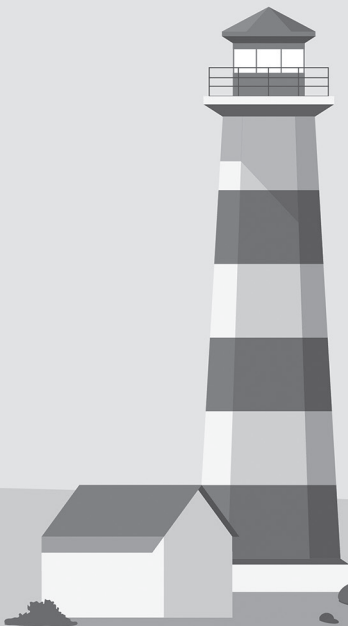
6월 12일 본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이용시설 20여 곳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련 기사 35면)



6월 12일 본소는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 '등지교실'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한국감정케어센터 이서원 센터장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관련 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 : 부끄럽게 주신 선물
패 : 패기 있게 거절합니다.
방 : 방법을 바꿔 주세요.
지 : 지원은 회원가입이 시작입니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부고 | 박양덕 이사
- 7 • 특집 ① |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심포지엄 ②
- 19 • 특집 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가정폭력행위자
- 33 • 가정폭력상담실
- 34 • 어떻게 할까요
-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성평등가족부’ 출범 소식에 부쳐

민주 사회의 기본인 민주 가정을 위한 혁신적 가족 정책 기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마침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전 정권 내내 폐지의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뜻깊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전임 대통령 주요 공약의 하나였고 실제 당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없애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편안 가운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가부 폐지안은 빠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더는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임했던 전 장관이 2023 새만금 챔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같은 해 9월 사임한 이후 여성가족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1년 반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을 철회해 기능을 유지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정부 기구는 1988년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입니다. 그러나 정무제 2장관실로 사회, 문화 관련 업무와 더불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관장하도록 했던 이 부처 역시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예산, 권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되어 있던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2001년 여성부의 신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 및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이관받게 되었고 2005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는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가족 및 보육 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돌려보내고 다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가, 2010년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가족 정책 관련 부문을 다시 이관받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처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성부’ ‘여성가족부’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파란만장한 변화와 부침을 경험한 정부 부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창립 당시부터 남녀평등, 부부평등 나아가 양성평등, 다양한 가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성 차별의 문제와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법률구조’의 중심에 놓고 7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모색을 지속해 온 상담소는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는 한결같이 가족 정책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

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하겠다.”며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그와 관련한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니 상담소로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다가옵니다. 일단은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이 새 정부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만 이를 비롯해 변화하는 사회와 가정,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가정폭력특례법, 이혼숙려제도 도입, 양육비 지급을 비롯한 미성년 자녀의 보호 문제, 성년후견제도, 비혼가정의 문제, 부부 재산제 등 우리 사회 가정 문제의 법과 제도 그 변화와 개선에 있어 시작점에는 언제나 상담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폐지 논란을 딛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성평등과 가족 전담 부처에 대한 기대에 덧붙여 ‘가족’의 의미와 중요함에 주목하여 사회의 구성원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가 세심하게 지켜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謹弔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본 상담소 박양덕 이사께서 지난 6월 20일 별세하셨습니다.

박양덕 이사는 상담소 창설자인 고 이태영 선생님과 일찍부터 이어온 인연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영자 과정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여성경영실무 강좌를 거쳐 ‘이영희 연합회’의 회장으로 오랜 기간 봉사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지난 198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감사를 거쳐 이사로 활동해 오시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소에서 추진해 온 가족법 개정운동을 비롯하여 상담소 일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같은 고인의 귀한 뜻은 상담소에 길이 남아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양덕 이사님이 상담소에 보내 주신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고 박양덕 이사 약력

1936년	함경남도 함흥 출생
195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정외과 입학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기 수료
1973-1985년	이화여대경영연구소 ‘이영희 연합회’ 회장
1981-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기성회 이사
1985-198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감사
1986-202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특집 ①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②*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주제 ②

혼인의 기능에 따른 비혼 생활공동체의 보호

차 선 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즈음 우리 사회에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배경으로 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 가족, 공동체 가족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 2022년에 이르면 한국 가족의 변화의 특징은 혼인율의 저하, 가구원의 소규모화, 가구 구성의 다양화, 1인가구 증가세, 아동가구감소세, 노인가구 증가세로 정리된다.³⁾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국민의 삶에 직접 적용되어야 할 법률은 여전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I.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통적 가족 질서 수용을 최대의 가치로 두었으나 꾸준히 성평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하지만 호주제도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시기부터 성평등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극복되게 되었다.¹⁾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인

II.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과 혼인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한국리서치가 2023년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까지는 최소 75% 이상이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부모, 손자녀와 같은 혈족관계와 며느리

* 지난 5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제폐지 이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과 혼인의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과제를 점검하여 미래 가족법의 대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 개의 주제와 그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호에 첫 번째 주제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는 두 번째 주제인 ‘혼인의 기능에 따른 비혼 생활공동체의 보호’의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요약해서 실는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https://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1)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2) 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상세한 통계조사는 김승권, 한국사회변동과다양한가족의출현, 보건복지포럼, 2005. 5. 9-18면 참조.

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2, 62면.

와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포함하는 사람은 모두 과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명 중 1명(26%)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조카,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버지·어머니의 형제/남매 및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보는 응답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⁴⁾ 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11.6%, 3촌 34.3%, 4촌 32.6%’이며, 4촌의 경우 의례적이거나 교류가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했고 6촌은 이 비율이 82.7%에 달했다.⁵⁾

혼인의 경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에는 33.6%에서 2022년에는 15.3%로 18.3%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선택적이라는 견해는 1998년 23.8%에서 2022년 43.2%로 19.4% 포인트 상승하여 이 두 견해의 감소와 상승 폭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 그 결과는 가족 형성의 일차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율의 감소는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도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2000년 15.5%에서 2023년 35.5%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3%로 감소하였다.⁷⁾

또한 혼인과 관련한 큰 변화는 남녀의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8년에 전체 과반 수준에 이른 후, 계속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6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각 연도a).⁸⁾ ‘결혼을 전제로 성인 남녀가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해서 전체의 65.7%가 동의하는 쪽이며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녀가 함께 살아도 된다’에는 전체 37.0%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은 2010년 20.6%에서 2016년에는 24.2%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증가 폭이 커지면서 2022년에는 34.7%에 이르게 된다.¹⁰⁾ ‘동반자 등록제’ 형식의 제도를 마련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6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III. 사실혼과 비혼 동거

1. 사실혼 개념의 정착과 그 범위

이처럼 최근 우리 국민은 혼외 동거 및 관계를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에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혼 이외에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사실혼 법리에 의한 것이 유일하냐에 대한 법리는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로 보고 있다.¹²⁾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혼인 의사 없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자발적인 동거 생활공동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혼외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축소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¹³⁾ 또한 내면의 혼인의 의사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혼인 장애 사유가 없는 관계가 객관적인 동거 사실이 있으면 대체로 혼인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한다.¹⁴⁾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지 부모 등 다른 사람

4) <https://hrcopinon.co.kr/archives/27170> (2025. 5. 14. 최종확인).

5) 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b2de57f7-0ab4-4326-a322-9f49f92d9ee9&page=30

6) 변수정·엄다원·안문희,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39면.

7)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text=\(2025.5.14.최종확인\)](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text=(2025.5.14.최종확인)).

8)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앞의 글, 42면.

9)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위의 글, 45-46면.

10)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위의 글, 48면.

11)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위의 글, 52면.

12) 김주수·김상용, 위의 책, 273면.

13) 이러한 입장으로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22, 154면.

1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프70 판결 :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군 ○○면 ○○리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다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해 5.1경 논산 연♡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을 신혼부락으로

에 알리고 가족으로부터 배우자로 인정되었는지와 같은 사회적 승인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할 때 고려하기도 한다.¹⁵⁾

2. 사실혼의 개념적 징표와 비혼 동거 관계

사실혼의 유형은 ① 무지, 경제적 빈곤, 인습에 따른 전통적 사실혼¹⁶⁾ ② 당사자가 법률혼 의사는 있으나 사실상 이유 혹은 우연적 사정으로 법률혼에 이르지 못한 사실적 우연적 사실혼, ③ 중혼과 같이 법률적 장애로 인한 법률적 필연적 사실혼, 그리고 ④ 의도적 선택적 사실혼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⁷⁾

이처럼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 반하여 동거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도 있다.¹⁸⁾ 2008년 이연주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거의 유형을 ① 혼인 상대와의 관계를 시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예비 동거 ② 결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대안 동거 ③ 결혼 또는 가족제도에 속하지 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체 동거 및 ④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편의 동거로 구별하였다.¹⁹⁾ 이어 2018년 김원정과 김순남의 한국의 동거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는 이연주(2008)의 동거 유형 구분에서 ‘대안동거’를 ‘잔여동거’로 대체하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잔여동거’를 ‘규범적 제약’과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세분화하였고, 규범적 제약에 의한 잔여동거는 “부부 특성의 조합이 통념상 전통적 결혼 규범에서 벗어난 동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사회·경제적 잔여동거는 “결혼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안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거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²⁰⁾

첫째, 혼인을 향해 전개되는 동거, 즉 이연주의 분류에서 예비동거는 혼인 상대와의 관계를 시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사실혼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 보호도 사실혼 법리에 따를 수 있다.

둘째,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안 동거는 결혼 조건을 어떤 이유에서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김원정·김순남의 연구는 이연주의 ‘대안동거’를 ‘잔여동거’로 구분하면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범적 제약에 의한 잔여동거를 결혼 규범에서 벗어난 동거”로 보았고, 사회·경제적 잔여 동거는 “결혼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안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거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전자는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분류에서 법률 장애로 인한 사실혼으로 사실혼 법리에 의한 법적 보호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잔여 동거는 혼인 의사, 사회적 승인의 유·무, 공동체의 존재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2.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5) 윤진수, 앞의 책, 155면 :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이 동거 전 가족들과 식사하며 인사를 나눈 점,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 점, 이웃에게 부부로 취급받고 5년간 함께 실버타운에서 생활한 점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였으나, 대인가정법원은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4년간의 동거했으나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하지 않았던 점,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던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선자, 고령화 사회의 가족법, 법학연구, 제45집, 201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33면,

16) 지원림, “사실혼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11, 461면.

17) 박인환, “사실혼 보호법리의 변천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9, 154~157면.

18) 우리보다 동거가 보편적인 유럽 국가에서는 동거의 유형을 ① 결혼의 전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동거, ② 단기간의 일시적 결합의 형태로서의 동거 ③ 출산 또는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책무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④ 출산으로 이어지고 혼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로운 결합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앞의 글, 25면.

19)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위의 글, 25면.

20) 김원정·김순남,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 가족제도: 1995-2015 혼인신고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30집 4호, 한국가족학회, 2018, 66면.

및 규범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편의적 동거와 대체동거는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편의적 동거는 경제적 편익이 동거의 동기이므로 이를 혼인으로서의 사회적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혼인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체동거는 혼인 의사는 없으나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승인이 있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이는 자발적 사실혼으로 보고 사실혼 법리로 법적인 보호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혼의 법리로 보호할 수 있는 혼외 동거 관계는 예비동거나 사회 경제적 제약에 의한 잔여동거가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대체동거나 편의적 동거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스스로 결혼제도의 선택을 원치 않는 것이므로 혼인법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들 관계는 [(가)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입법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범위의 확장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며 일

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²¹⁾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²²⁾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²³⁾ 반면에 상속권과 같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²⁴⁾

하지만 규범적 제약이 있는 혼외 동거 관계는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계가 해체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²⁵⁾ 그러나 장기간 공동생활 동안 재산을 축적한 경우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청산할 기회가 없고 때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자의 사망 시 아무런 공동생활이 없었던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주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거나,²⁶⁾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²⁷⁾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장도 상속관계의 확실성에 대한 요청으로 입법적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²⁸⁾ 그러나 입법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속법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점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생활공동체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생활공동체의 의미는 여전히 명

2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22)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2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2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2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26)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279면.

27) 김주수·김상용, 위의 책, 285면 : 이 주장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28) 김주수·김상용, 위의 책, 297면 각주 383) 재인용.

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는 일시적인 동거에서 자녀가 출생해도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²⁹⁾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 시기에 동성동본인 혼외 동거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법을 적용했는데, 당시 대법원규칙은³⁰⁾ 이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 법 시행 당시 출생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시행 당시 동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③ 성년자 2인이 연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실혼의 성립을 위한 생활공동체는 주거의 동일성이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되어야 할 것으로 반드시 동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³¹⁾

이처럼 사실혼을 판단의 기준을 동거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승인 여부가 더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고 본다. 위의 대법원 규칙에서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위해 성년 2인이 연서를 요청하였는데 2인은 친족이나 또는 처의 친지도 가능하였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친족이 배우자로 승인한다는 것은 법적 승인에 준할 정도의 강력한 사회적 승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승인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독립적 요건으로 보고 ① 혼인 장애 사유가 없으며, ② 혼인의 의사가 있고 ③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④ 상대방의 가족 또는 친족 구성원 및 친지로부터 배우자라는 사회적 승인이 있는 관계라면 그 명칭이 예비동거든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대안(=잔여)동거든 구별할 필요 없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처럼 네 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한 사실혼 관계는 현재 인정되는 법적 보호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재판소는³²⁾ 2024년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전혀 다를 바 없으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부부재산의 적절한 청산 내지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입법자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청산 내지 부양에 관한 권리가 적절히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거래의 안전이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고, 이는 잠재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는 점,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조항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법의 특성상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직계가족에 의한 승인이 아닌 제3의 친지에 의한 사실혼 관계의 승인만으로는³³⁾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상속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29) 예컨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에서는 간헐적 정교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30) 국가기록원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제980호)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320508>.

31)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601면; 윤진수, 앞의 책, 313면.

32) 헌법재판소 2024. 3. 28 자 2020헌바494, 2021헌바22(병합) 결정: 다수의견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3) 위 대법원 규칙에서 동성동본 간의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년자 2인의 연서한 서식을 요구하는데 이 때 연서하는 자가 반드시 친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고 부 또는 처의 친지도 가능하였다. 즉 반드시 가족이나 친족 구성원이 아닌 친지에 의해서도 사실혼 관계 존부에 대한 사회적 승인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차선자, 사실혼으로서 동성생활공동체,

재산분할청구권은 생활공동체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청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에게 승인된 명확한 지위가 중심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의 유지 기간이 더 중요하므로 직계 가족을 통한 사회적 승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실혼 관계의 승인이 있어도 재산분할청구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입법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1. 보호되는 생활공동체의 유형과 전제

혼외 동거공동체의 유형 중 혼인 의사가 없는 대체 동거는 사실혼의 법리가 아니라 입법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동거와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지만 상호 부양은 없는 관계도 가능하고 부양과 상호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동거가 없는 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거 자체에 대한 편견에 더해, 주거 비용이 높아 주거 마련이 쉽지 않고 결혼 전까지는 혼자 살거나 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 압박이 있다 보니 최근에는 동거 관계 보다는 분리된 주거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커플 관계를 의미하는 ‘livingapart-together(LAT)’ 관계가 더 흔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³⁴⁾

이렇게 볼 때, 생활공동체의 구성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려면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첫째, 성애적 관계만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성애적 관계가 배제된 협력관계도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성애적 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그것은 [(가)

대체동거관계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한 법]이 될 것이다. 입법의 범위를 이와 같이 결정하면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혼인하지 못하는 관계는 이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성애적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상호 돌봄 관계로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유형의 관계에 법적 보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입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입법으로 캐나다 앨버타 주의 성인 상호의존 관계법(Province of Alberta,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은 상호 의존하기로 하는 파트너인 성인 2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호주의 빅토리아 주의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도 가족 관계 및 돌봄 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장 제1파트, 제1조 목적). 그 이외에 벨기에의 비혼인 동거인이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은 성애적 관계가 아닌 경우우에도 상호 돌봄과 부양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법하고 있다.³⁵⁾

둘째, 이처럼 다양한 혼외 생활공동체 관계를 입법을 통하여 보장하려면 혼인법에 준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획일적인 법적 보호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법적 보호의 범위를 선택할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등록이 가능한 동거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체 동거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혼인의 의사가 명백히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동거를 혼인의 대체로 선택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혼인에 대해 법률상 제약이 있는 관계도 대체 동거를 선택할 수 있는가? 즉 금혼의 범위에 있는 관계³⁶⁾ 또는 일방이 중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동거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혼인의 효과를 법을 우회하여 달성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혼외 동거관계가 성애적 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일 경우 금혼의 범위에 해당되거나 중혼적 관계이어서는 안 될

인권법평론, 제31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311-360면 참조.

34) 변수정·엄다원·안문희, 앞의 글, 32면.

35) 조은희,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법과 정책, 제28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64면.

36) 오스트리아의 [등록된 파트너법]도 금혼의 범위에 있어 대해서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Eingetragene Partnerschaft-Gesetz : § 5. (1)Eine eingetragene Partnerschaft darf nicht begründet werden 3. zwischen Verwandten in gerader Linie und zwischen voll- oder halbbürtigen Geschwistern sowie zwischen einem an Kindesstatt angenommenen Kind und seinen Abkömmlingen einerseits und dem Annehmenden andererseits, solange das durch die Annahme begründete Rechtsverhältnis besteht.

것이다.

반면에 성애적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적인 돌봄 관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혼 범위의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일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이 관계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제3자와 상호 의존적 돌봄 관계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³⁷⁾

2. 동거 관계의 특성에 따른 법적 효력

(1) 동거의 의미와 요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365일 동거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경제적 공동체로 살고 있다면 합의에 의하여 동거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활공동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대체동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생활공간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직업 등의 사유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상호부양을 하고 있거나, 돌봄을 일차적 의지하는 관계로 협조하고 있다면 대체동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³⁸⁾

(2) 상호 부양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833조는 그 기준으로 혼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 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 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으로 보고 있다.³⁹⁾

그런데 대체 동거를 선택하고 이러한 공동생활 비용을 전혀 공동으로 지출하지 않는 관계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고 공동 생활비용을 서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간의 공유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3) 재산 관계

생활공동체의 재산은 당사자에게 재산 관계를 합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관계를 신고할 시점에 약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도 당사자 합의로 약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7) 성애를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인간의 상호 의존적 파트너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도 5 (1) 한 사람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성인 상호 의존적 파트너를 가질 수 없으며 기혼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안에는 성인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법 제5조). 뿐만 아니라 성인 간에 상호 의존관계를 위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당사자가 이미 기존 성인 상호 의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다 (제7조). 그리고 성인 상호간의 파트너 계약은 계약체결 후 상호의존 관계에서 함께 살지 않았거나 함께 살 의도가 없는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제8조 제1항).

<https://www.canlii.org/en/ab/laws/stat/sa-2002-c-a-4.5/latest/sa-2002-c-a-4.5.html>

38) 이에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공동의 삶이란 이익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두 당사자가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PACS법에서 의미하는 공동의 삶은 공동주거지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의 의무는 부부 중 일방이 공동의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것임에 반해, 동거에서 공동의 삶의 의무는 반드시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요건으로 전제되는 의무로 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혼인과 다른 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폭력행위가 있을 때는 공동의 삶의 의무에 대한 면제가 인정된다. 박준혁, 프랑스의 PACS에 관한 연구(Étude sur le PACS de droit français),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29-130면 : 팩스에서 동거의무(obligation de cohabitation)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프랑스 민법 제515-3조에 의하면 ‘공동 거주지에 속한 관할 법원에 팩스를 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간접적으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은희,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167면 ; 반면에 2010년부터 시행된 오스트리아의 [등록된 파트너(Der eingetragene Partnerschaftsgesetz)]는 공동주거(gemeinsamen Wohnen)를 조건으로 하지만(EPG 제8조 2항). 일방의 파트너가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단기일 내에 다른 곳에 있어야 할 개인적인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EPG 제8조 3항),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별거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희, 의의 글, 173면.

39)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고 본다.⁴⁰⁾ 다만 약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생활공동체의 당사자들이 사전에 재산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될 것이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일 것이나, 이 관계가 혼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산에 대해서도 현행 혼인법이 취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부부재산관계를 별산제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동거 관계의 경우에도 별산제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⁴¹⁾ 또한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과 생활비용의 공동 부담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며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⁴²⁾

마지막으로 이들 관계가 해소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별산제를 원칙으로 할 경우, 생활공동체의 해소 이후 민법

상의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제도를 별개로 인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제든지 혼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당사자 합의로 등록 관계를 맺기로 정하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혼인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원하지 않고 관계의 체결과 해체에 있어 혼인보다 약한 정도의 책임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혼인법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특히 혼외 생활공동체가 성인 간의 의존 계약의 형태를 포함하는 넓은 형태의 등록제도로써 성격을 가진다면 이러한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재산분할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별산제를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 동안 발생한 귀속 불명의 재산을 공유로 보고 분할하면 될 것으로 본다.⁴³⁾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소되었을

40) 이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이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성립 후 발생하는 재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생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합의로 재산에 대해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용혜인 의원 발의 [생활동반자법(안)]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25조(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는 생활동반자관계 신고 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1) 용혜인 의원의 (안)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 생활동반자관계 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생활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제26조) 특유재산은 명의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제27조).

42) 용혜인(안) : 제28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1999년 PACS의 도입 당시, PACS의 양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유가 추정되었다. 구 민법 제515-5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구(meubles meublants)에 대한 공유를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가구에 대한 부분은 현 민법 제534조에, 가구는 아파트의 사용이나 장식에 사용되는 동산으로, 카펫, 침대, 의자, 유리잔, 시계, 탁자, 그릇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이나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는 그릇에 대해서는 가구가 아니라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유가 추정됨을 구 민법 제515-5조 제2항에서 규정했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인해, 공유 부분은 삭제되고, 별산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PACS의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의 추정이었던 부분이, 원칙적으로 별산제가 되었다. 박준혁, 앞의 글, 134면 : 반면에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재산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등록동반자법]도 재산의 분할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등록된 파트너십이 사망이 아니라 해산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어 관계가 해소될 경우 파트너십 관계의 재산과 저축은 두 등록된 파트너 간에 분할된다. 이 때 재산 및 저축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채는 분할 시 고려된다. 여기서 파트너십 재산이란 파트너십 기간 동안 두 파트너가 사용했던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의 재산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가정용품 및 공동 거주지도 포함된다. 또한 파트너십 저축은 파트너십 기간 동안 처분을 목적으로 두 파트너가 축적한 모든 종류의 투자를 의미한다(제24조). 그러나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로 받은 것, 그리고 파트너가 개인적인 용도 또는 직업 수행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할에서 제외된다(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주거지의 경우에도 등록 파트너 일방이 공동거주를 위하여 전적으로 마련하였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합의가 있었거나 다른 파트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해야 하는 때에는 분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분배의 방식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 파트너 각각이 재산의 취득 및 저축을 통한 재산의 축적에 기여한 정도와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제26조 제1항). 특히 부양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등록된 파트너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현제로서는 법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⁴⁴⁾

(4) 사회보장 관계에서의 지위

등록된 파트너에게 사회보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안)]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2조 제2항 부터 제25항까지). 판례도 사회보장 관련해서는 사실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넓은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보장을 인정하였다.⁴⁵⁾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면 등록된 파트너에게도 사회보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생활공동체의 성격이 성인 간에 상호 의존적 공동생활 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경우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한 사회보장권의 인정은 왜곡된 사용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등록이나 유족연금의 수령과 같은 것은 수령자의 노동능력을 반영한 연령, 장애 여부 및 등록된 관계로 지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⁴⁶⁾

(5) 친자 및 입양관계

상호 돌봄과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여 혼인을 대체하는 동거 관계까지 생활동반자 관계로 볼 경우 친자 및 입양 관계는 기계적으로 혼인 관계에 준하는 법적 지원 이외에 여러 특성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대체 혼인적 성격의 생활공동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부는 인지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확정될 것이다. 이처럼 인지를 통하여 친자관계가 확정되었을 때 민법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1조 제5항).

그러나 부모가 처음부터 등록된 생활공동체 관계였던 경우 출생한 자녀에게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의 개념은 적용할 수 없다. 민법의 이 규정은 모가 비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출산 후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고 있었던 경우에 인지가 이루어지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나 등록을 전제로 혼인을 대체하는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 제781조는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 이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동조 제1항), 혼인신고를 전제하지 않는 등록 파트너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록된 파트너 관계의 경우에도 자녀를 출산한다면 성을 어떻게 할지 합의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제1항에 '혼인신고시'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관계의 '파트너로 등록시'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

을 이행한 것, 생계별이에 참여한 것, 그리고 공동으로 가계관리를 하였거나 기타 지원도 기여로 간주한다(제26조 제2항).

44) 상속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등록동반자법]도 같은 입장으로 등록된 파트너에게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발의[생활동반자법(안)]에서도 상속권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과거 독일의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sgesetz)]은 피상속인의 생존한 생활동반자는(Lebenspartner)는 1촌 친척과 함께 상속 재산의 4분의 1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고, 2촌 친척이나 조부모와 함께 절반에 대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었다(제10조 제1항).

45) 대법원은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 금혼의 범위에 해당한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 연금수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46) 프랑스의 PACS 계약의 당사자도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필수적인 권리만 인정되고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PACS의 당사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사망한 배우자의 전환연금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 박준혁, 앞의 글, 138-139면. 이와 비교하여 용혜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안)]은 모든 권리를 혼인 배우자에 준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등록된 파트너와 혼인 배우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다. 이러한 개정이 없다면 인지와 함께 자녀는 무조건 부의 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⁴⁷⁾

다음으로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는 등록된 생활공동체 관계의 특성이 혼인 대체적인 것이든 상호 의존계약 관계인지와 무관하게 입양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민법은 성인 간의 입양을 인정하고 있고 입양으로 법정친자 관계가 형성되면 상호 부양, 상속 및 사회보장에서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등이 당연히 따라오는 법적 효과라는 면에서 상속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면 성인 상호 간의 상호 의존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그런데 등록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성인 2인이 미성년 아동을 민법상의 일반입양을 하고자 할 때, 공동 입양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혼인을 대체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이 있을 경우 일반입양이든 친양자 입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공동 입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의존계약 형태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는 공동 입양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혼외 생활공동체 당사자들의 입양에 대해 획일적으로 공동 입양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양하려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에 따라 공동 입양 원칙을 취할 것인지 단독 입양 방식을 따를 것인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⁴⁹⁾

(6) 주거 공간에 대한 이용과 임대차의 관계의 승계

혼외 생활공동체의 재산을 별산제 원칙으로 보면 관계의 해소 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일방이 공동의 주거를 처분하거나 생활공동체가 해소된 후 특유재산으로 처분되게 되면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혼외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혼외 생활공동체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제는 대체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용과 임대차 관계 승계를 긍정하고 있다.⁵⁰⁾ 생활공동체 관계가 등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7) 그 이외에 등록된 생활공동체 관계가 해소될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민법 제837조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 2를 준용해야 할 것이다, 용혜인 의원의 (안)에서도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나이와 양육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한다(동법(안) 제9조).

48) 최근 프랑스에서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노인들이 혼자 집에 머물면서 비자발적으로 고독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이후에는 「주택, 개발 및 디지털 진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LOI n° 2018-1021 du 23 novembre 2018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약칭 : ELAN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 제117조는 “세대 간 동거계약이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30세 미만의 자에게 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주거의 일부를 30세 미만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거하는 동안 노인을 위한 별다른 서비스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 간 동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청년이 무상으로 노인의 거주지에 살면서 노인을 위한 시간을 조금 할애(일례로 청년은 오후 7시에 귀가하여 1시간 동안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함 등)하는 세대 간 동거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강명원, 노인의 비자발적 고독사에 관한 헌법상 권리와 세대 간 계약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 계약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7권 제2호, 2023년, 8면.

49) 반면에 용혜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 쌍방의 공동 입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입양한 자의 친생자로 본다(동법(안) 부칙, 제2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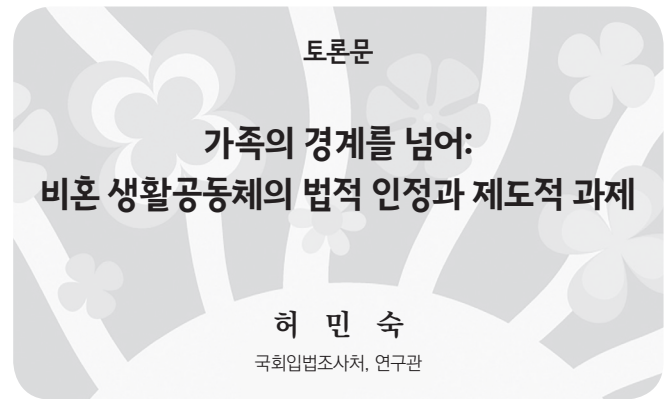
50) 프랑스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PACS가 해소된 경우 사망한 당사자 소유의 주거지에서 생존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주거지가 상속대상에 해당하더라도 1년 동안 주거지와 가구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민법 제515-6조 제3항) 임대차 계약이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와 같이 PACS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공동 권원(Co-titularité)이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1751조), 박준혁, 앞의 글, 137면 ; 오스트리아 [등록된 파트너 법]에서도 등록 파트너 일방에게 상대방이 긴급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주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주택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일방에게 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삼가하고 주택에 부양받는 사람이 주택을 잃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 또한 독일 [생활동반자법]에서도 주거에 대해 독일 민법 제1568a조와 제1568b조를 준용하여 주거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IV. 결론

2005년 호주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도 저하가 그러한데 특히 우리 사회 낮은 출산율에 대해 최근에는 조심스럽지만 비혼 관계에서의 출산을 문제로 생각하는 편견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률혼을 하면서도 법률혼 이전에 동거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 국민의 가치관도 이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로 전환되면서 성애적 관계를 넘어 비자발적인 고독과 돌봄 부재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자발적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공동체의 당사자들은 법률혼처럼 동거, 부양 및 협조를 상호교환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혼외 생활공동체 중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에 대한 대체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여전히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에 근거한 법적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성애를 배제하고 상호 의존하고 돌봄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생활공동체를 구성한 자들은 여전히 사실혼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관계맺음의 다변화 현실 및 이를 반영하는 법률 상황의 간극을 극복하는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결속의 정도에 따라 층위적으로 구별하여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하여 그 관계의 특성에 따른 법적 보호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국민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스스로 선택한 관계의 형태 그 자체로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결혼 중심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나 일부의 바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구성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가족 모델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족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지, 그리고 이들의 권리와 지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제문은 ‘비혼 생활공동체’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기존 가족법이나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사회적 승인, 그리고 공동생활의 실체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해왔지만, 발제문은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생활공동체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혼 생활공동체는 혼인의사 없이도 상호 돌봄, 부양, 협조, 경제적 협력 등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성애적 관계가 없는 협력적 동거,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상호의존적 공동체, 돌봄·복지망으로서의 공동체 등이 포함됩니다.

비혼 생활공동체가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상호 돌봄, 경제적 협력, 정서적 지원 등 가족과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동반자법 등 새로운 법적 제도를 통해 동거, 부양, 재산관계, 사회보장, 주거권 등 실질적 권리와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비혼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위해 발제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안합니다. 성애적 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상호 돌봄·부양·협조의 실체가 있을 것, 공동의 경제생활 또는 정서적·사회적 상호의존성이 인정될 것, 365일 공동거주가 아니

더라도 실질적 공동체로 인정할 것, 그리고 일정한 절차(등록 제 등)를 통해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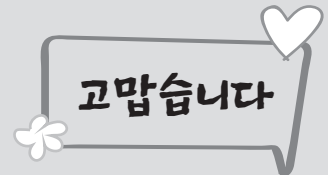
생활공동체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할 때, 각 요건별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계좌 운영 내역,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사회적 의존성의 경우, SNS 상의 상호작용 기록이나 공증된 합의서, 제3자의 증언서 등이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조작 가능성이나 허위 진술의 위험 등 한계도 존재하므로, 기술적 보완책(예: AI 대화 패턴 분석, 블록체인 기반 기록 검증)과 제3기관의 관계 평가 등 신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 증거 수집이 어려운 집단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공동체 등록제 도입 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재산분할, 사회보장 등)에 상응하는 책임(부양의무, 공동생활 유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해소 시 책임과 권리의 범위 및 이행 방식을 사전에 합의·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해체 시에는 등록 해지나 관계 종료 신고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체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 및 부채 분배, 주거권 승계, 부양책임 종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약자가 포함된 경우 일정 기간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분쟁 발생 시 중립적 조정기구를 통한 조정 절차, 사후 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와 생활동반자 관계의 법적 책임 기준의 균형 문제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만, 생활동반자는 노동능력·등록 기간·장애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동일한 부양 의무를 지닌 관계임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혼 생활공동체가 성애적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상호 돌봄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성애 관계의 생활공동체도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에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 ‘가족으로 여기는 자’ 등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가까운 이들의 긴밀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밀함과 상호 돌봄을 당연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더 가까운 이들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변화하는 가족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가족이 아닌 친밀한 생활공동체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문은희, 이병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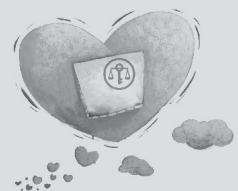
· 대학생 자원봉사

강민서, 강영진, 강재연, 고아름, 권윤아, 김다현, 김민서, 김서연, 김세림, 김세준, 김세진, 김소영, 김시연, 김시현, 김연지, 김주하, 김지원, 나윤우, 남궁지윤, 노현지, 문정현, 박지수, 배지연, 서예정, 손재원, 송민성, 신이주, 신재원, 안세현, 양승완, 양은진, 윤상철, 이다경, 이도연, 이도현, 이서연, 이아정, 이윤미, 이윤섭, 이주홍, 이 린, 이홍익, 임성완, 장진혁, 정준희, 최민제, 한소원, 한수희, 허 진, 황보선우, 황예원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원정숙, 최문원, 이현혜 님





특집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가정폭력행위자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 40대 남성 행위자가 30.5%로 가장 많고,
-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5.2%로 가장 많아

I. 들어가는 말

본 상담소는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292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¹⁾ 2023년에 위탁받아 2024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153명을 포함하면 2024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445명이었으며, 이 중 292명은 2024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24년에 상담이 종료된 292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항목별 분석 내용

1) 사건 관련

① 수탁 법원

2024년에 상담이 종료된 292명을 수탁한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이 98.3% (287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287	98.3
수원가정법원	3	1.1
인천지방법원	2	0.6
합 계	292	100

2)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0대 남성 행위자가 30.5%로 가장 많아
-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5.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 발생 많아

① 남녀별

행위자 292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21명(75.7%), 여성이 71명(24.3%)이었다. 여성 행위자 71명 중 44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여성 행위자 71명 중 54명(76.1%)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1) 구체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284명, 수원가정법원 4명, 인천가정법원 3명, 대구가정법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92명을 2024년에 수탁받았다.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 또는 생존의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성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성	221	75.7	74	25.3
여성	71	24.3	218	74.7
합계	292	100	292	100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0.5%(8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3.6%), 30대(16.5%)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40대가 28.5%(8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2.6%), 50대(21.2%) 순이었다.

구분 연령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2	0.6	5	1.7
20대	26	8.9	24	8.2
30대	48	16.5	66	22.6
40대	89	30.5	83	28.5
50대	69	23.6	62	21.2
60대	44	15.1	34	11.6
70대	13	4.5	18	6.2
80대 이상	1	0.3	-	-
합계	292	100	292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4.5%(1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2.9%(96명)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구분 교육정도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14	4.8	17	5.8
중졸	21	7.2	17	5.8
고졸	130	44.5	129	44.2
전문대졸	14	4.8	15	5.1
대졸	96	32.9	106	36.4
대학원이상	17	5.8	8	2.7
합계	292	100	292	100

44.2%(12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6.4%(106명)를 차지했다.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4.3%(7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23.6%(69명), 단순노무 15.8%(46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6.9%(10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19.2%(56명)를 차지했다.

구분 직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38	13.0	108	36.9
회사원	71	24.3	56	19.2
단순노무	46	15.8	38	13.0
자영업	69	23.6	41	14.0
운전	11	3.8	6	2.1
교육직	2	0.6	7	2.4
전문직	4	1.4	6	2.1
기술직	16	5.5	6	2.1
학생	6	2.1	8	2.7
무직	29	9.9	16	5.5
합계	292	100	292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1%(79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2.9%(67명)였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4.2%(129명)를 차지하였다.

구분 월수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8	2.7	9	3.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0	10.3	33	11.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4	18.5	56	19.1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9	27.1	37	12.7
500만원 이상	54	18.5	28	9.6
일정한 수입이 없음	67	22.9	129	44.2
합계	292	100	292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234명으로 80.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성인자녀 관계인 경우가 16.8%(49명)를 차지하였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도 이혼부부, 남매관계, 자매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구 분		수 (명)	백분율 (%)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201	68.9
	사실혼 부부	33	11.4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44	15.1
	부모-미성년자녀 관계	5	1.7
기타 가족관계	이혼 부부	3	1.1
	남매 관계	4	1.2
	자매 관계	2	0.6
합 계		292	100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234명)에 부부 일방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7.3%(17명)로, 2023년 9.7%(41명)보다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3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모두 중국이었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33.4%(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몽골과 베트남이 각 16.7%(각 2명)로 나타났다.

본 국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중국	3	100	4	33.4
몽골	-	-	2	16.7
베트남	-	-	2	16.7
일본	-	-	1	8.3
태국	-	-	1	8.3
필리핀	-	-	1	8.3
칠레	-	-	1	8.3
합 계	3	100	12	100

⑦ 혼인형태별²⁾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8%(159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혼인형태		
(남)초혼-(여)초혼	159	68.0
(남)재혼-(여)초혼	20	8.5
(남)초혼-(여)재혼	17	7.3
(남)재혼-(여)재혼	38	16.2
합 계	234	100

⑧ 동거기간별³⁾

- 1년 이상 5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폭력발생 많아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5.2%(59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26.1%(110명)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10년 전인 2014년 17.2%(16명)보다는 1.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가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59명 중 30명(50.9%⁴⁾)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가정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게 된다.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시기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해 타협과 조정,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때인데,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둘째, 부부 59명 중 25명(42.4%⁵⁾)은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통제하고 제압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34명)에 국한하였다.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34명)에 국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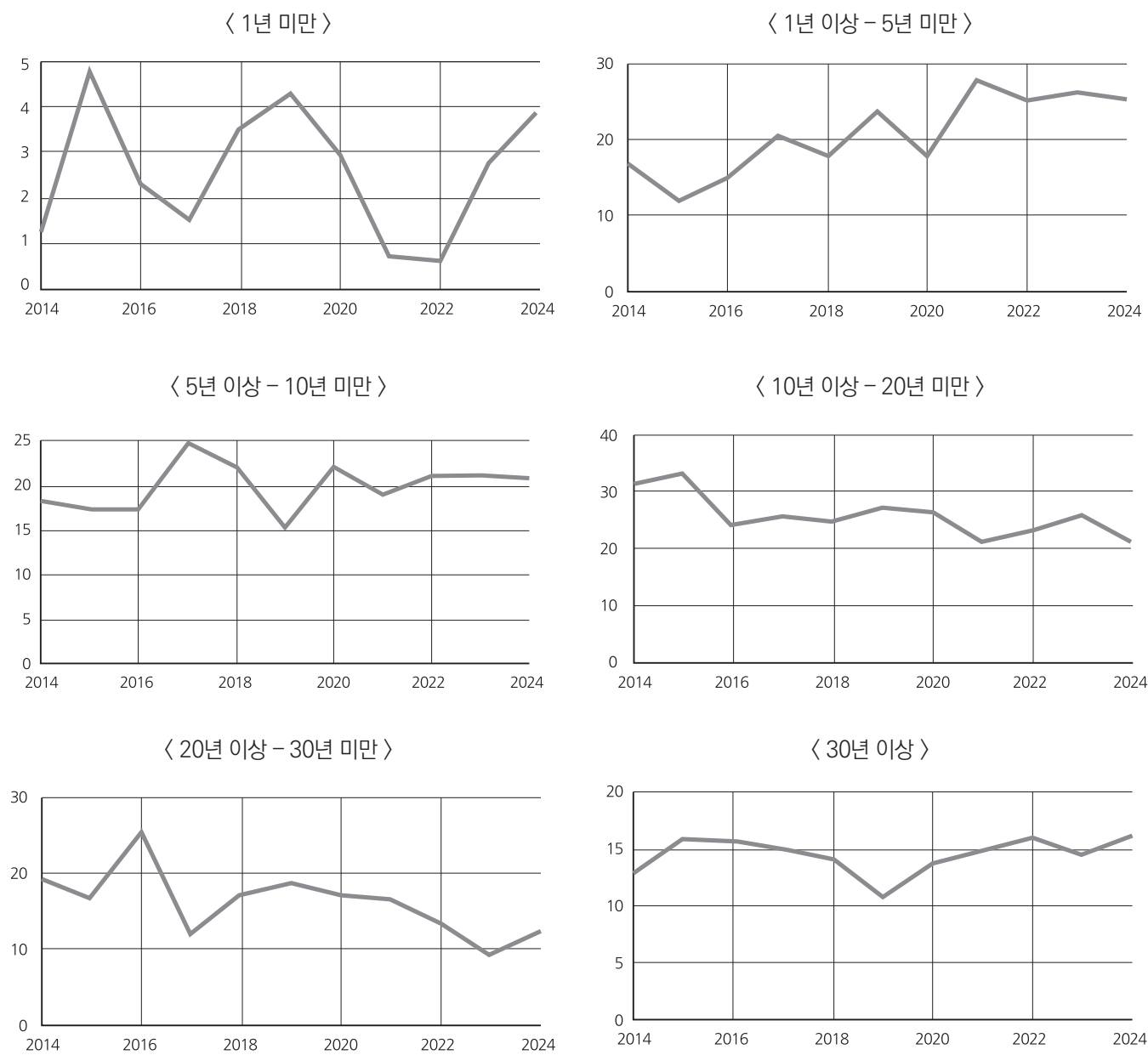
4)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5)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고수하고자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참거나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1.4%(50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3년 25.8%(109명)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31.2%(29명)보다 상당히 감소하였다.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부 50명 중 38명(76%⁶⁾)은 결혼기간에 축적된 갈등이 배우자와

의 대화 또는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집안일과 관련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 시기는 자녀 양육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부 50명 중 17명(34%⁷⁾)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비행 등 생활 태도, 자녀의 학습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 그림 1. 2014년-2024년 최근 10년간 동거기간 추이 분석 >

6)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7)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동거기간 \ 구 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9	3.9
1년 이상 ~ 5년 미만	59	25.2
5년 이상 ~ 10년 미만	49	20.9
10년 이상 ~ 20년 미만	50	21.4
20년 이상 ~ 30년 미만	29	12.4
30년 이상	38	16.2
합 계	234	100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7.3%로 가장 많아
아내의 남편폭력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경우 많아
- 2023년보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사건 1.3배 가까이 증가
- 2023년보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경우 많아,
이는 극단적인 분노조절 실패로 볼 수 있어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57.3%(1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각 9%(각 26명)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3.7%(72명)에서 9%(26명)로 감소하였고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은 5.9%(31명)에서 6.2%(18명)로 다소 증가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자녀폭력이 8.2%(24명)로 가장 많았는데, 2023년과 비교하면 자녀폭력이 9.7%(51명)에서 8.2%(24명)로 다소 감소하였고, 부모폭력이 4.9%(26명)에서 6.5%(19명)로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26명 중 20명(76.9%)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하였다. 아내의 잦은 음주, 이로 인한 늦은 귀가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		구 분	수 (명)	백분율 (%)
부부 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167	57.3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26	9.0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26	9.0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18	6.2
부모- 자녀 관계	자녀폭력		24	8.2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2	0.6
	부모폭력		19	6.5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대한 자녀의 맞대응		4	1.4
기타 가족 관계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1	0.3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에 대한 누나의 맞대응		1	0.3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2	0.6
	동생에 의한 언니폭력		2	0.6
합 계			292	100

②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8.3%(287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5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경우도 1.7%(5명)에 달했다.

폭 력 수 준 \ 구 분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287	98.3
1주 이상 ~ 5주 미만	5	1.7
합 계	292	100

③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2.1%(152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3년 54.8%(287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특수협박'이 8.2%(24명)로 많았고 이는 2023년 6.5%(34명)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0.3%, 1명),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3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0.3%, 1명), 방 안에서 통화하던 중에 소리를 지르는 것에 피해자가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방 이불 위에 종이를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 불을 꺼 방화미수에 그친 경우(0.3%, 1명) 등 다양한 종류의 폭력행위가 있었다.

폭력 수준 \ 구 분	수(명)	백분율(%)
폭행	152	52.1
특수협박	24	8.2
폭행, 재물손괴	21	7.2
폭행, 특수협박	14	4.8
재물손괴	13	4.5
존속폭행	12	4.1
특수폭행	11	3.8
폭행, 협박	6	2.1
상해	5	1.7
특수상해	5	1.7
특수재물손괴	3	1.1
특수폭행, 재물손괴	3	1.1
협박	3	1.1
존속폭행, 재물손괴	2	0.7
특수재물손괴, 폭행	2	0.7
특수존속상해	2	0.7
상해, 폭행	2	0.7
특수존속협박	2	0.7
특수폭행, 폭행	1	0.3
폭행치상	1	0.3
재물손괴, 폭행, 협박	1	0.3
상해, 특수협박	1	0.3
특수협박, 특수폭행	1	0.3
존속협박, 존속폭행	1	0.3
상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1	0.3
특수재물손괴, 퇴거불응, 폭행	1	0.3
방화미수, 재물손괴, 폭행	1	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0.3
합 계	292	100

④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행동, 성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

- 행위자 모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 정서적 폭력 가해
- 2023년보다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 증가

첫째, 정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 292명 모두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상담처분을 이행하면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하였던 폭력의 정의를 상대방의 정서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재물손괴도 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등 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적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51.4%(150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 42%(220명)보다 그 비율이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22.6%(21명)보다는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가 45.9%(134명)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41.2%(216명)보다 1.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22.6%(21명)보다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에 기인하여 다양한 폭력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다.

이외 정서적 폭력 중 ‘잠을 못 자게 괴롭힌 경우’는 2023년 30%(157명)에 비해 29.1%(85명)로 소폭 감소하였다. 부

〈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항 목	폭력행위 유무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292(10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292(10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42(48.6)	150(51.4)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158(54.1)	134(45.9)
4.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237(81.2)	55(18.8)
5.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20(75.3)	72(24.7)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07(70.9)	85(29.1)
경제적 폭력	241(85.3)	51(17.5)
7.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45(83.9)	47(16.1)
8. 피해자의 재산 또는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	253(86.6)	39(13.4)
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51(86.0)	41(14.0)
10.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249(85.3)	43(14.7)
통 제	225(77.1)	67(22.9)
11.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32(79.5)	60(20.5)
12.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31(79.1)	61(20.9)
1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228(78.1)	64(21.9)
1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33(79.8)	59(20.2)
1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27(77.7)	65(22.3)
1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다.	241(82.5)	51(17.5)
1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28(78.1)	64(21.9)
18. 사회활동(직업갯기, 교육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229(78.4)	63(21.6)
19.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28(78.1)	64(21.9)
2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287(98.3)	5(1.7)
성적 폭력	285(97.6)	7(2.4)
21.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285(97.6)	7(2.4)
2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286(97.9)	6(2.1)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285(97.6)	7(2.4)
24.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289(99.0)	3(1.0)
25.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했다.	290(99.3)	2(0.7)
경미한 신체적 폭력	46(15.8)	246(84.2)
26.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74(59.6)	118(40.4)
27.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106(36.3)	186(63.7)
28.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렸다.	99(33.9)	193(66.1)
심한 신체적 폭력	63(21.6)	229(78.4)
29.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37(46.9)	155(53.1)
30. 피해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237(81.2)	55(18.8)
31.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30(44.5)	162(55.5)
32. 피해자 목을 졸랐다.	242(82.9)	50(17.1)
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231(79.1)	61(20.9)
34.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231(79.1)	61(20.9)

부관계에서는 행위자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리면서 괴롭힌 경우가 가장 많았다(36명).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서 괴롭힌 경우가 많았다(11명).

- 2023년보다 경제적 폭력 1.7배 가까이 증가
-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 많아

둘째, 경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17.5%(51명)로 2023년 10.5%(55명)보다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가 16.1%(47명)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 9.9%(52명)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은 부부가 의논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생활비 지출, 자녀양육이나 교육,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문제 및 재산관리를 행위자(주로 남편)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등 경제적인 공유를 통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족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 2023년보다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통제행위 1.3배 이상 증가하였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져
-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통제행위 많아

셋째,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통제행위는 22.9%(67명)로 2023년 17.2%(90명)보다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제의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22.3%(65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14.1%(74명)에 비해 그 비율이 1.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더 나아가 관리하고 감시하려는 통제행위는 직접적인 신체폭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통제행위는 피해자의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져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6명).

- 부부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성적 폭력도 있어

넷째, 성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2.4%(7명)로 나타나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부부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무력을 사용하여 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였다.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성적 폭력으로 이어져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 2023년보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증가,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 가장 많아

다섯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4.2%(246명)로 나타나 2023년 79.2%(415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린 경우’가 66.1%(193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3년 59.5%(312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57%(53명)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이다. 부부싸움이 심화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거나, 자신을 혼계하려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뺨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다.

- 2023년보다 심한 신체적 폭력 증가,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경우 가장 많아

여섯째, 심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8.4%(229명)로 나타나 2023년 71.4%(37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55.5%(162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3년 38%(199명)보다 그 비율이 1.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36.6%(34명)보다는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53.1%(155명)로 많았는데, 이는 2023년 39.1%(205명)에 비해 1.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외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린 경우’는 18.8%(55명)로 2023년 10.7%(56명)에 비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뛰어넘어, 행위자의 분노조절이 극단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 폭력행사 이유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행위자 음주 → 경제갈등 순

-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가치관 강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 2023년보다 행위자의 음주문제로 인한 폭력행사 2배 이상 증가

① 폭력행사 이유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6.1%, 199건), 행위자 음주(16.4%, 125건), 경제갈등(12.3%, 94건) 순으로 나타났다.⁸⁾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6.1%, 199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

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노래를 시끄럽게 크게 듣고 있다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라고 잔소리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10년째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 온 음식을 피해자가 할 일이 많다며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고’ 폭력을 행사하게끔 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만 있는 피해자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화가 나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쌈장을 꺼내놓지 않았다고’, ‘퇴근하고 들어온 자신에게 애를 좀 봐달라며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고’, ‘애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강의하러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문제와 자녀양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66건, 8.7%).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가사노동이나 육아분담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43건, 5.6%). 아동 및 청소년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학업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생활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23건, 3.1%).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위자의 음주(16.4%, 125건)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 7.7%(10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행위자 292명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한 경우는 38%(111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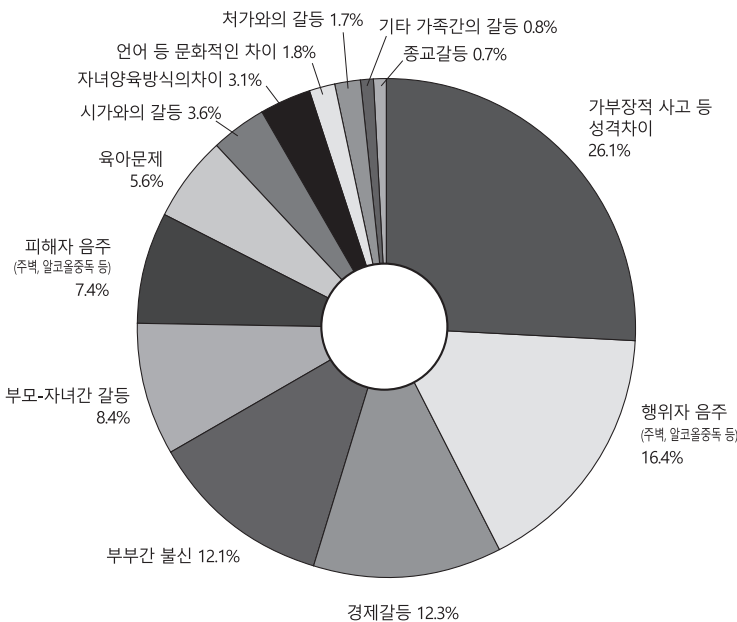
‘만취했으니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고’,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자고 있는 아이를 보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는 자신은 술에

8)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취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하였다. 행위자는 적게는 소주 1병에서 많게는 3병 이상 마신 만취 상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폭력 행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음주문제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예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7.4%(56명)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16명은 여성 행위자로 피해자인 남편의 음주문제, 즉 술 마시고 들어와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구성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머지 40명은 남성 행위자로 피해자인 아내의 음주문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음주문제는 남편의 폭력과 음주, 외도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성장기에서 결핍된 감정들을 술에 의존하여 해결 또는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부부갈등 내지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갈등(12.3%, 9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 11.8%(164건)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 그림 2. 폭력행사 이유 〉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실직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빚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빈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수입과 지출을 피해자와 공유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을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폭력 사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부간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불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통제를 가하는 것 등이 경제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구분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199	26.1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125	16.4
경제갈등	94	12.3
부부갈등	92	12.1
부모-자녀갈등	64	8.4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56	7.4
육아문제	43	5.6
시가와의 갈등	27	3.6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23	3.1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	14	1.8
처가와외의 갈등	13	1.7
기타 가족간의 갈등	6	0.8
종교갈등	5	0.7
합계	761	100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 피해자 등 상담 병행 66.5%
- 행위자 중 87.8%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법원에서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43.5%(127명)에 달했는데, 이는 2023년 44.9%(230)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는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 욕구와 동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소에서는 행위자 상담시 가능한 전체 피해자에게 상담 의사를 타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상담한 경우가 66.5%(194명)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대상자		
행위자 본인상담	98	33.5
행위자 본인 · 배우자 · 기타 가족상담	194	66.5
합 계	292	100

② 상담방법별

2024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대면상담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이후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상담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집단상담인 라오니 모임 역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24년도에는 4,565건의 개별상담, 203건의 부부상담, 115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24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로 229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6회로 68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

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수요일 총 45회 실시되었으며, 총 508명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동지교실」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12회의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491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부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6개월의 상담 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도에는 총 292명의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도에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총 20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212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연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여성 6명에게, 총 52회에 걸쳐 진료 및 상담,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을 비대면 및 대면으로 유연하게 진행한 결과, 2024년에 상담이 종료된 292명 중 87.7%(256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 담 방 법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36	12.3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40	13.7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집단상담	26	8.9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90	65.1
합 계	292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행위자의 폭력중단
- 부부는 상담종료시 61.1%가 화해 · 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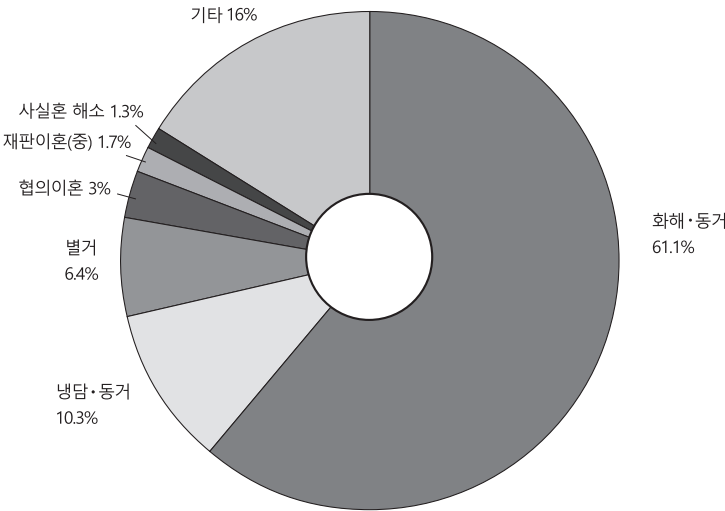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234명의 상담 종료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9.1%(232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2명은 상담위탁처분이 6개월 기간연장 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폭력재발 없음	232	99.1
폭력재발 함	2	0.9
합 계	234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61.1%(143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화해 · 동거	143	61.1
냉담 · 동거	24	10.3
별 거	15	6.4
사실혼 해소	3	1.3
협의이혼	7	3.0
재판이혼(중)	4	1.7
기 타 ⁹⁾	38	16.2
합 계	234	100



〈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

② 부모자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49명),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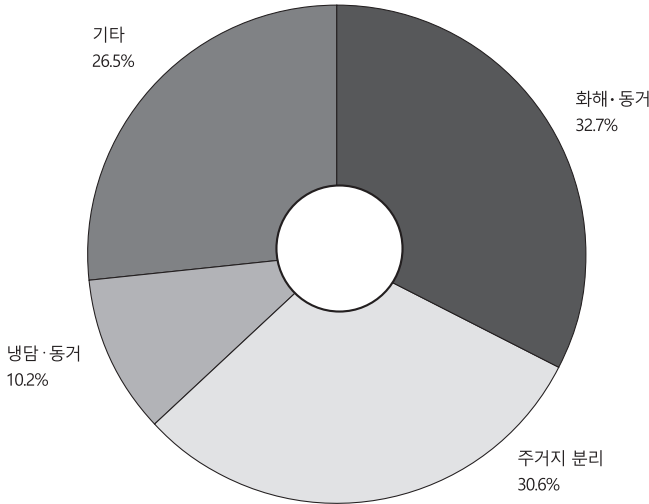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폭력재발 없음	49	100
폭력재발 함	0	0
합 계	49	100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32.7%(16명)으로 많았다.

9) 기간연장(10.7%, 25명), 보호처분 변경(3%, 7명), 보호처분 취소(2.1%, 5명), 보호처분 경정(0.4%, 1명) 등을 포함하였다.

구 분	수(명)	백분율(%)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화해·동거	16	32.7
주거지 분리	15	30.6
냉담·동거	5	10.2
기 타 ¹⁰⁾	13	26.5
합 계	49	100



〈그림 4.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Ⅲ. 맺음말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상담을 종료한 행위자는 총 292명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의 중요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75.7%(221명), 여성이 24.3%(71명)로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행위자 71명 중 54명(76.1%)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쌓였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폭력’을 방어 내지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25.2%, 59명)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26.1%(110명)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10년 전인

2014년 17.2%(16명)보다는 1.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가 다른 기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① 부부 59명 중 30명(50.9%¹¹⁾)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가정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게 된다.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시기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해 타협과 조정,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때인데,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② 부부 59명 중 25명(42.4%¹²⁾)은 육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통제와 제압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의 유형으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7.3%(167명)로 가장 많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26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 중 20명(76.9%)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하였다. 아내의 잦은 음주, 이로 인한 늦은 귀가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는 ‘폭행’이 52.1%(15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폭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특수협박’이 8.2%(24명)로 많았고 이는 2023년 6.5%(34명)에 비해 1.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다양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임시보호 명령 기간 중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10) 기간연장(14.3%, 7명), 보호처분 변경(6.1%, 3명), 보호처분 취소(4.1%, 2명), 보호처분 경정(2%, 1명) 등을 포함하였다.

11)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12) 폭력행사의 이유는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다.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방화미수에 그친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폭력행위가 있었다.

다섯째, 행위자 292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섯째, 정서적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51.4% (150명)로 2023년 42%(220명)에 비해 그 비율이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22.6%(21명)에 비해서는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가 45.9%(134명)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 41.2%(216명)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2014년 22.6%(21명)에 비해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일곱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4.2%(246명)로 나타나 2023년 79.2% (415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66.1%(193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8.49% (229명)로 나타나 2023년 71.4%(37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55.5%(162명)로 가장 많았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한 신체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뛰어넘어, 행위자의 분노 조절이 극단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여덟째,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6.1%, 199건), 행위자 음주(16.4%, 125건), 경제갈등(12.3%, 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위자의 음주(16.4%, 125건)는 2023년 7.7%(1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행위자 292명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한 경우는 38%(111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

시키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예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7.4%(56명)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16명은 여성 행위자로 피해자인 남편의 음주문제, 즉 술 마시고 들어와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구성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머지 40명은 남성 행위자로 피해자인 아내의 음주문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음주문제는 남편의 폭력과 음주, 외도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성장기에서 결핍된 감정들을 술에 의존하여 해결 또는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부부갈등 내지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째,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234명) 99.2%(232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61.1%(143명)로 가장 많았다. 본소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성역할에서도 유연하지 못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담소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이라는 개입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성역할의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행위자와 피해자 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차연실 상담위원

재혼가정의 전혼자녀 문제가 폭력 발생의 원인 되기도 부부관계의 정립에 대한 숙고와 자녀 문제에 대한 이해 필요

2021버1*** 폭행, 재물손괴 / 2022버4**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부부상담 12회 등 총 18회

상담기간

2022. 5. 10 ~ 2022. 11. 22.

상담경과

부부는 10년 전 결혼하여 8년간 법률혼 부부로 지내다 2년 전 이혼하고 같은 거주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아내의 전혼자녀 1남(26세), 1녀(24세)는 독립하여 잘 지내며 연락도 자주 한다. 남편의 전혼자녀 2녀(17세, 15세) 중 큰 딸은 조모가 양육하고 둘째 딸은 3년 전 부모의 이혼과 관련한 친구들의 뒷담화와 왕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로 처분을 받고 있다.

2021년 2월 사건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남편의 둘째 딸 양육 문제를 꺼내자 남편이 화를 내며 아내의 목과 가슴을 밀쳤고, 아내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밥상을 뒤엎고 집기류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밥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책상 유리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년 1월 사건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남편의 딸에게 욕설한 문제로 시비하다 남편이 양손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는 상호 폭력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이후 부부는 화해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확고하여 남편의 전혼자녀도 잘 보듬겠다는 마음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최근 둘째 딸이 법적 처분을 마치고 조모집에 살면서 다시 갈등의 소지가 생겼다. 남편은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힘들어하면서도 주말마다 딸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다녀오는 등 자녀 돌봄에 힘쓰는데 아내가 이를 불만스러워한다고 호소하였다. 아내는 남편 딸의 행동에 기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일을 꼽으며 남편은 좋으나 딸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였다.

남편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딸을 포용하도록 조언하였고, 아내에게는 부부관계 재정립에 대한 숙고와 함께 남편과 살려면 그 자녀도 포용하여야 함을 조언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이혼이 전혼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른으로서 남편의 전혼자녀들을 잘 보듬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마음을 비우기로 다짐하였다. 남편 역시 이혼 후 딸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반성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딸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였다.

종결상담시 아내는 남편의 딸 문제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있었으며 남편은 집에서는 순응적인 딸이 학교에서는 일진 행세를 하는 점을 걱정하면서도 잘 보듬고 가겠다고 하였다. 부부의 혼인유지 의사는 확고하였고, 상대방과의 관계만족도를 부부 모두 사건당시는 10점 만점에 6점, 종결시는 1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좋아진 점으로 존중대화를 실천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게 된 점을 꼽았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Q 제 딸은 17살 어린 나이에 임신 하여 출산 하다가 출산 중 사고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손자가 돌이 지났음에도 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동이나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손자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가 딸의 친권자로서 손자에 대한 친권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딸의 19번째 생일이 지나면 딸의 치료 등을 위하여 딸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조언을 들었고, 이에 현재 딸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딸의 성년후견인이 되면 그 후에도 지금까지 손자에 대한 친권을 대행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910조는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귀하 부부는 현재 위 조항에 따라 손자에 대한 친권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후견인도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는 조항(민법 제948조 제1항)을 두고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 자녀에 대한 친권대행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딸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딸의 성년후견인이 자동적으로 손자에 대한 친권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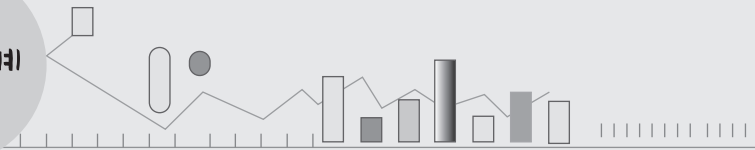
딸이 성년이 되면 귀하 부부의 딸에 대한 친권은 물론 손자에 대한 친권대행권도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이후 귀하가 딸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손자에 대한 친권대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딸의 의식불능 상태 및 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모두 손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이 성년이 된 이후 귀하가 손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딸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귀하를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심판을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김민선 변호사

〈 2025년 6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6/5	7명	프로그램 소개와 관계 형성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12	9명	폭력의 유형과 안전계획	
		6/19	9명	자기 돌봄	
		6/26		긍정사고와 감정조절	
	음주문제 집단상담	6/13	1명	음주와 트라우마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20	1명	음주와 뇌	
		6/27	1명	음주와 공동의존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6/4	6명	관계의 정석, 우리 집의 대통령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6/11	6명	관계의 정석, 고름이 살 안 된다	
		6/18	7명	관계의 정석, 주고받기의 균형	
		6/25	8명	관계의 정석, 내려놓기	
	동지교실	6/11	57명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음주문제 집단상담	6/13	10명	음주와 트라우마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20	6명	음주와 뇌	
		6/27	9명	음주와 회복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 교육

6월 12일 본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이용시설 20여 곳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적채무 조정인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제도(본소 전규선 상담위원)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제도(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최윤희 원장) 그리고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정수부 김영진 팀장)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 후에는 노숙인의 신용회복 지원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교육과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노숙인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장래 경제적 갇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의 문제에 주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서울시 보현의 집, 비전트레이닝센터 등 다수의 노숙인 이용시설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노숙인들의 신용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관련사진 2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를 찾는 마음” - 동지교실

지난 6월 11일, 본소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 ‘동지교실’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한국감정케어센터 이서원 센터장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강사는 ‘다행’이라는 주제의 핵심은 똑같은 일에서도 괜찮은 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다행’이라는 말이 타인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타인을 위로할 때는 선부터 ‘다행’보다는 먼저 상대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게 말이에요”와 같은 공감의 표현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 비로소 ‘다행’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황희정승의 예를 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을 대하면 관계가 편안해질 것이라며, 현재에 감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여유가 생긴다고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강연은 ‘다행’이라는 일상적인 단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통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동지교실 강좌는 7월 9일, ‘뿌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을 주제로 본소 강당에서 열리며 하반기부터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순찬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6.19. 가족센터 종사자 공통역량교육 -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기 쉬운 가족법, 부채와 가정생활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12일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상반기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양료 청구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5년 6월 상담통계

총 건수 3,834		
법률상담 (3,168)		
면접	전화	인터넷
814	2,258	96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47	29	90

• 인터넷 정보 이용 35,73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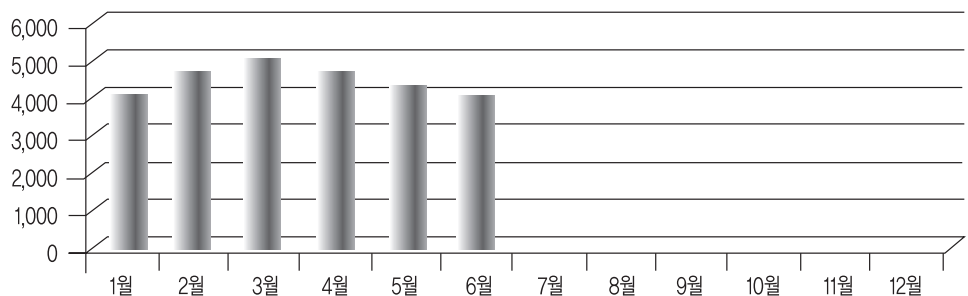
2025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3,83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168건(82.6%), 화해조정 547건(14.3%), 소장 등 서류작성 29건(0.8%), 소송구조 90건(2.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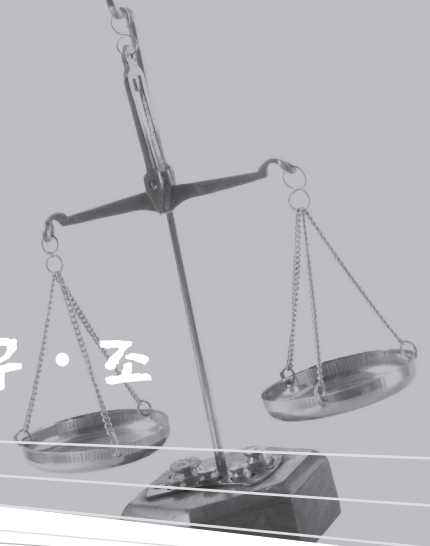
법률상담 3,16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5월에 비해 부부갈등(3.9%→4.1%), 사실혼해소(0.6%→0.7%), 위자료·재산분할(4.9%→5.9%), 친권·양육권(3.6%→5.0%), 친생부인(0.6%→0.7%), 입양(1.2%→1.5%), 파

양(0.0%→0.1%), 파혼(0.1%→0.3%), 이혼무효·취소(0.0%→0.1%), 미성년후견(0.6%→1.0%), 채권·채무(0.3%→0.4%), 파산(1.6%→1.7%), 민사절차(0.1%→0.2%), 민사기타(0.6%→0.8%), 형사절차(0.1%→0.6%), 형사기타(0.5%→0.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16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14건(25.7%), 전화상담 2,258건(71.3%), 인터넷상담 96건(3.0%)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4-1-156

담당 : 이동규(원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03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0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고, 2011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하였으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21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65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5. 2. 1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년 9. 29.자 조정조서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년 2. 18.자 확정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2024. 4.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5. 3.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가출을 반복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16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7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매일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말다툼이 발생하면 피고는 항상 원고를 폭행하였다. 특히, 2018년경 피고는 사건본인이 칭얼대는 것에 짜증을 내며 사건본인을 안고 있는 원고를 향해 컴퓨터를 집어던지고,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2019년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집 살림살이를 손괴하였고, 2023년경 다시 원고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2019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가출을 반복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6.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5-1-118

담당 : 이동규(서울)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남, 60대)와 채무자(여, 30대)는 2010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9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였으나 채무자는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2025. 5.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478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0대)은 남편과 사별하고 야채 도매상을 하며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심부전 판정을 받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신청인은 과거 사채로 힘들어하던 큰아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던 빌라를 팔아서 빚을 일부 갚아주었지만 이로 인해 빚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큰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신청인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 큰아들의 부채로 인해 신청인을 비롯한 다른 식구들도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신청인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던 딸은 몇 년 전 의료 사고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되며 실직하였고, 작년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인은 매달 받던 용돈이 없어지자 생계유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심각한 수준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다리가 휘고 거동이 불편하여 작년 2월 무릎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골다공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없어 생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부터 투석을 받고 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5. 5.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7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8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9일(2박 3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